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9. 6. 14.(금) 10:00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발 의 자: 김 영 주 의원 등 7인
-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O 발의일자: 2019년 5월 31일
  - O 회부일자: 2019년 6월 4일

### 3. 개정이유

충청북도교육감의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함.

### 4. 주요내용

- 가. 재위탁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나. 재계약 또는 재위탁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의회 동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4항, 제5항)
- 다. '재위탁의 금지'→ '제3자 위탁 금지' 로 변경함(안 제18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의 적절 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 및 보고 사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 충청북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 운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사무가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 운영이되기 위해서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에 관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세부적인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 사무의 지휘체계 확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